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
■ 정혜경의원 · 신장식의원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7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원천적 쟁의 행위 금지규정 삭제 등(안 제41조제2항 삭제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0일 정혜경의원 · 신장식의원 ·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IV. 검토의견

1.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등(안 제41조제2항 삭제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긴 조정기간 적용,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긴급조정 등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쟁의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주요방위산업체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 중 電力, 用水 및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爭議行爲를 할 수 없으며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第54條(調停期間) ①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이 있는 날 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이내에 종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 ----일반사업-----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

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은 관계 當事者間の 合意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人으로 구성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은 그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가 순차적으로 排除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當事者가 合意로 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者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者를 지명한다.

第76條(緊急調整의 決定)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 現存하는 때

정된 主要방위산업체-----15일-----.

② 제1항의 規定에 따른 조정기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10일,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主要방위산업체-----15일-----.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主要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

② 제1항의 規定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

③ 제2항의 規定에 따른 특별조정위원-----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배제하고-----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당사자가 합의로-----노동위원회의 위원-----사람을-----사람을-----.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정의 결정-----.

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緊急調整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公表함과 동시에 中央勞動委員會와 관계 當事者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第77條(緊急調整時의 爭議行爲 중지)
관계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 때에는 즉시 爭議行爲를 중지하여야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2. 쟁의행위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것으로서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② -----긴급조정의 결정-----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
--공표함과-----중앙노동위원회--
-----당사자-----
--.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①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즉시 쟁의행위-----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경우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이외의

<u><신 설></u> <u>第88條(罰則)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 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 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한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 결 정의 공포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 다.</u> <u><삭 제></u>
---	--

나. 검토의견

헌법 제33조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을 받는 주요방산업체는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장비,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정됨.²⁾

과거 제9호 헌법(1980년 전부개정) 제31조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7년 현재의 헌법 제33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³⁾은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⁴⁾에 따라 노동조합법 또한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

2)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기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3) 법률 제3967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제한)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헌재 1993. 3. 11. 선고 88헌마5 결정

헌법 제33조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들 근로자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①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②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③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⁶⁾을 하여 2024년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동 결정문은 ①합헌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남북관계 및 국제질서는

5) 현재 1998. 2. 27. 선고 95헌바10 결정

6) 창원지법 2021. 6. 10.자 2021초기256 결정

상당 부분 변화하였고, ②근로3권에 대한 보장 수준 및 국민의 인식 또한 한층 높아져 왔으며, ③방산근로자는 공무원에 유사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지도 않음에도 업무의 공공성만을 이유로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시하였음.⁷⁾

또한 방산근로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는 단체행동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일반물자 생산 근로자 및 지원부서 근무자 등)의 단체행동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이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방산사업부로 전보조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한 원천적인 단체행동권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신, 이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익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즉, 현재 수도·전기·가스, 은행·조폐, 방송·통신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⁹⁾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7)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 제2판, 박영사, 2023, 708면.

8) 김두현,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권 제한 헌법·법률 개정 의견’,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 3권 실태』 세미나자료, 2017.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①노동쟁의 조정전치주의 하에서¹⁰⁾ 조정기간이 15일로서 일반사업 10일에 비해 길며¹¹⁾, ②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¹²⁾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고, ③공익사업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통해 쟁의행위를 중지¹³⁾시킬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도 적용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의 위해 방지와 근로자 단체행동권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 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①헌법 제33조제3항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안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의 일부 제한만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③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계엄법」을 통하여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¹⁴⁾를 할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1987년 개헌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존치시킨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률이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에서도 ‘총포류·유도무기 등

14)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쟁의행위 금지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쟁의행위 금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¹⁵⁾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쟁의행위 금지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오히려 쟁의행위 제한의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②현행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③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행위는 헌법 제33조제3항이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보다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④긴급조정은 사후적 조정수단에 불과하고, 제도

1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상 매우 엄격하게 적용¹⁶⁾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요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예방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16) 긴급조정은 1963년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4회만 결정
(‘69)대한조선공사, (‘93)현대자동차, (‘05)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